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1.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10. 31.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3. 11. 4.

라. 상정일자 : 2013. 11. 13.(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해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 인하)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매각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함.

-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 위탁이라 하고 일반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관리라고 정의함에 따라 조례 문구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 사용자부담 완화 및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나. 개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법률 제10006호, 2010.2.4., 일부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4조, 제19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제82조(대통령령 제24631호, 2013. 6. 21, 일부 개정)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3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2조의 2, 제62조의 3)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4%)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4%)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4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6% 분할납부 이자율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3~6%였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2~4%로 조정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부기간 조정 (제37조제1항)
 -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 둘째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4조, 제19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제82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용료, 대부료, 납부기간 및 이자율 등을 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받기 위하여 2013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세부 조문별 검토내용은

- 안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 ▶ 제24조는 “위탁관리”에서 “관리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통일을 기하고,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24조 수정안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 에----- (단서 신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 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 조 및 제21조에 ----- . 이 경우 영 제19조 각 항의 관리위탁기간과 갱신 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② ----- 행정재산 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 ----- 위탁과 동시에 ----- ----- .	②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 ----- 관리위탁과 동시에 ----- ----- .
③ -----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 ----- 수탁자가 ----- ----- 수탁자가 ----- ----- 수탁자의 ----- .	③ -----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 ----- 관리수탁자가----- ----- 관리수탁자가 ----- ----- 관리수탁자의 ----- .
④ ----- --- 수탁자가 ----- .	④ ----- --- 관리수탁자가 ----- .
⑤ ----- 수탁자를 ----- ----- .	⑤ ----- 관리수탁자를 ----- ----- .
⑥ 생략	⑥ 생략

○ 종합 검토의견은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시행기일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없음

《 답 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수정) : 김영태, 허회숙, 노현경, 구재용, 권용오, 이수영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7명)

7. 기타사항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1항 “행정재산을 위탁”을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으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하며, 후단에 “이 경우 영 제19조 각 항의 관리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로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안 제24조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한다.

안 제24조제3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행정재산의 관리 수탁자”로 하고,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③ -----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 ----- 수탁자가 ----- 수탁자가 ----- 수탁자의 -----.</p>	<p>③ -----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 관리수탁자가 ----- 관리수탁자가 ----- 관리수탁자의 -----.</p>
<p>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 수탁자가 -----.</p>	<p>④ ----- 관리수탁자가 -----.</p>
<p>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⑤ ----- 수탁자를 -----.</p>	<p>⑤ ----- 관리수탁자를 -----.</p>
<p>⑥ 생략</p>	<p>⑥ 생략</p>	<p>⑥ 생략</p>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위탁”을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으로, “제21조 및 제22조”를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하며, 후단에 “이 경우 영 제19조 각 항의 관리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제24조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로 하고,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매년”을 “첫째 년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둘째 년도 이후의 대부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3 퍼센트”로 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7조제4항의 신설규정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매각계약 및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62조제2항, 제62조의3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교환하는 변상금 및 교환차금부터 적용한다.
- ③ 제62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 ----- ----- . 이 경우 영 제19조 각 항의 관리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p> <p>②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 ----- ----- 관리위탁과 동시에 ----- ----- .</p> <p>③ -----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 ----- , ----- ----- 관리수탁자가 ----- ----- ----- . ----- 관리수탁자가 ----- ----- 관리수탁자의 ----- ----- .</p>

현행	개정안
<p>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수탁자</u>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 ----- <u>관리수탁자</u>가 ----- ----- -----.</p>
<p>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u>수탁자</u>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⑤ ----- <u>관리수탁자</u>를 ----- ----- ----- ----- -----.</p>
<p>⑥ 생략</p> <p>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⑥ 생략</p> <p>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 ----- ----- <u>첫째</u> <u>년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둘째</u> <u>년도 이후의 대부료는</u> ----- -----.</p>
<p>②·③ (생략)</p> <p><신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p>

현행	개정안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p>	<p>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p>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2퍼 센트-----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4퍼센 트----- -----.</p> <p>③ ----- -----</p>

현행	개정안
<p>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u>6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4. (생략)</p>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u>3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u>5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 <u>4퍼센트</u>-----</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 <u>2퍼센트</u>-----</p> <p>-----.</p> <p>⑤ -----</p> <p>-----</p> <p>-----</p> <p>----- <u>3퍼센트</u>-----</p> <p>-----.</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생략)</p> <p><신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u>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u></p>
<p><신설></p>	<p>제62조의3(교환차금의 분할납부) <u>영 제11조의3 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